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4. 29(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4. 4. 10

나. 제출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4. 4. 10

라. 상정일자 : 2014. 4. 29 (제215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 김장근 보건복지국장
- 검토보고 :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을 15인 이상 20인 이하를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변경하여 사회복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안 제4조제1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는 당연직에서 위원 중 호선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함.
(안 제4조제2항)
- 사회복지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어 위원 자격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4항과 일치하도록 변경하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자격을 명확히 함.
(안 제4조제3항)
-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된 단체의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배제
(안 제9조의2)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

거나 건의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2001년부터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의 수정

2005년 1월 1일 이후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있기에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안 제4조(구성)

안 제4조제1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이 “위원회의 구성을 15인 이상 20인 이하를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개정(‘08. 11. 5)되었고, 이에 따라 조례로 다시 규정한 위원의 수를 상향 조정하여 사회복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조례의 경우 법령에서 위임한 부분만 조례로 규정하고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조례로 다시 규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이는 입법경제상 실익이 없고 추후 법령이 개정될 경우 즉시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법령위반이나 조례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경우, 법령이 개정되면 법령과 조례가

상충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최근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구성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안 제4조제2항은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규정한 것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는 것임.

안 제4조제3항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를 추가로 규정하였음.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2항은 위원의 자격을 ‘예시주의’가 아닌 ‘열거주의’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과 달리 조례로 위원을 추가하는 것은 법령과 조례가 상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야 할 것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령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다시 조례로 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령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동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조례임에도 상위법에서 규정한 위원의 위촉대상을 조례로 달리 정하고 있음. 이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1)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어 같은 조 제4항2)에 따라 위촉·지명대상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결론적으로 유사한 위원회의 난립을 예방하고 업무의 신속한 처리 등 효율성을 위해 위원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는 관련법³⁾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대신할 때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어 실제 법령해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며,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조례로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을 추가로 규정한 사례⁴⁾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규정한 위원의 자격을 혼용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은 조례상 위촉대상에서

-
- 1)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2) ④ 제1항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 3)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4) 대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대전- 4급이상 공무원
광주-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그밖에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경기도, 세종시, 강원도, 경남, 경북, 제주의 경우 관계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

제외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2항에서는 위촉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만큼 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각 법과 조례안의 위원자격 비교]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4항)	개정조례안 (제4조)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5.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사업시행기관의 대표 5.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6. 공익을 대표하는 자 7. <u>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자</u> (신설) 8. <u>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그 밖에</u>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안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안 제9조의2에서는 사회복지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가 우려된다는 감사관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배제하고,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다만, 그 필요성에 따라 조문을 신설하려는 취지와 입법례에 따라 아래 예시와 같이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수정의견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제2조에 규정된 심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제2조에 규정된 심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u>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시킨다.</u>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u>회피하여야 한다.</u>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강병수 위원

- 법과 시행규칙이 이미 오래전에 개정되었는데 뒤늦게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 답 변 >

○ 보건복지국장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은 위원의 수에 대해서는 2008년에, 위

원장의 호선부분은 2012년에 개정되었으나, 이에 대해 뒤늦게 파악된 바도 있었고, 위원회를 각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하여 인천의 사회복지를 활성화시키고자 금번 조례개정시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게 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박승희·신현환·강병수·박순남·제갈원영 위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각1인”을 “각 1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30인”을 “30명”으로 한다.

안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행정기관”앞에 “관계”를 삽입하여 같은 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사람

안 제9조의2제1항 중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를 “심의에서 제척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를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시킨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u>15인</u> 이상 <u>20인</u> 이하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p> <p>1. ~ 6. (생략)</p> <p><u><신설></u></p> <p>7.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p>	<p>제4조(구성) ① ----- ----- ----- 30인 이하로 ----- -----.</p> <p>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각 호의 어느 하나----- ----- -----부터 제7호----- ----- -----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u></p> <p>8.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p>	<p>제4조(구성) ① ----- ----- ----- 각 1명-----15명 ----- 30명 ----- -----.</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 ----- ----- ----- ----- ----- ----- ----- ----- ----- ----- -----.</p> <p>1. ~ 6. -----</p> <p>7. (개정안과 같음)</p> <p>8. <u>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사람</u></p> <p>9. 관계----- ----- ----- -----</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 data-bbox="213 349 373 389"><신설></p>	<p data-bbox="568 349 986 808"><u>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u> <u>위원은 제2조에 규정된 심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u></p> <p data-bbox="568 824 986 1048">② <u>위원장은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해당위원을 심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u></p> <p data-bbox="568 1122 986 1346">③ <u>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u></p>	<p data-bbox="1011 349 1430 808">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 ----- -----, ----- -----<u>심의</u> <u>에서 제척된다.</u></p> <p data-bbox="1011 824 1430 1111">② <u>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해당위원을 심의에서 제외시킨다.</u></p> <p data-bbox="1011 1122 1430 1346">③ ----- ----- -----<u>심의·의결</u> <u>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p>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각1인”을 “각 1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30인”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내지 제6호에”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기타”를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그 밖에”로 하여 같은 호를 제9호로 하며,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사람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제2조에 규정된 심의 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시킨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u>각1인</u>을 포함하여 <u>15인</u> 이상 <u>20인</u> 이하로 구성한다.</p> <p>② <u>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위원은 <u>다음 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u>제1호 내지 제6호</u>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p> <p>1. ~ 6.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7. <u>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u></p>	<p>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u>각 1명</u>을 포함하여 <u>15명</u> 이상 <u>30명</u> 이하로 구성한다.</p> <p>② <u>위원장은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위원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u>제1호부터 제8호</u>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u>각 호의 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u></p> <p>8. <u>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사람</u></p> <p>9. <u>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u></p>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제2조에 규정된 심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서 제척된다.</p> <p>②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시킨다.</p> <p>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p>